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미래를 앞당기는  
공정한 약속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미래를 앞당기는  
공정한 약속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의 자발적 민간 협력연구가 활발해집니다.  
개방형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창조경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가 이끌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협력연구 성과 귀속과 수익 배분,  
상생과 공정을 추구하는 협력연구 문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이 제시합니다.

미래 가치를 높이는 공정한 약속,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함께 만드는 지식재산 강국,  
창조경제로의 도약을 앞당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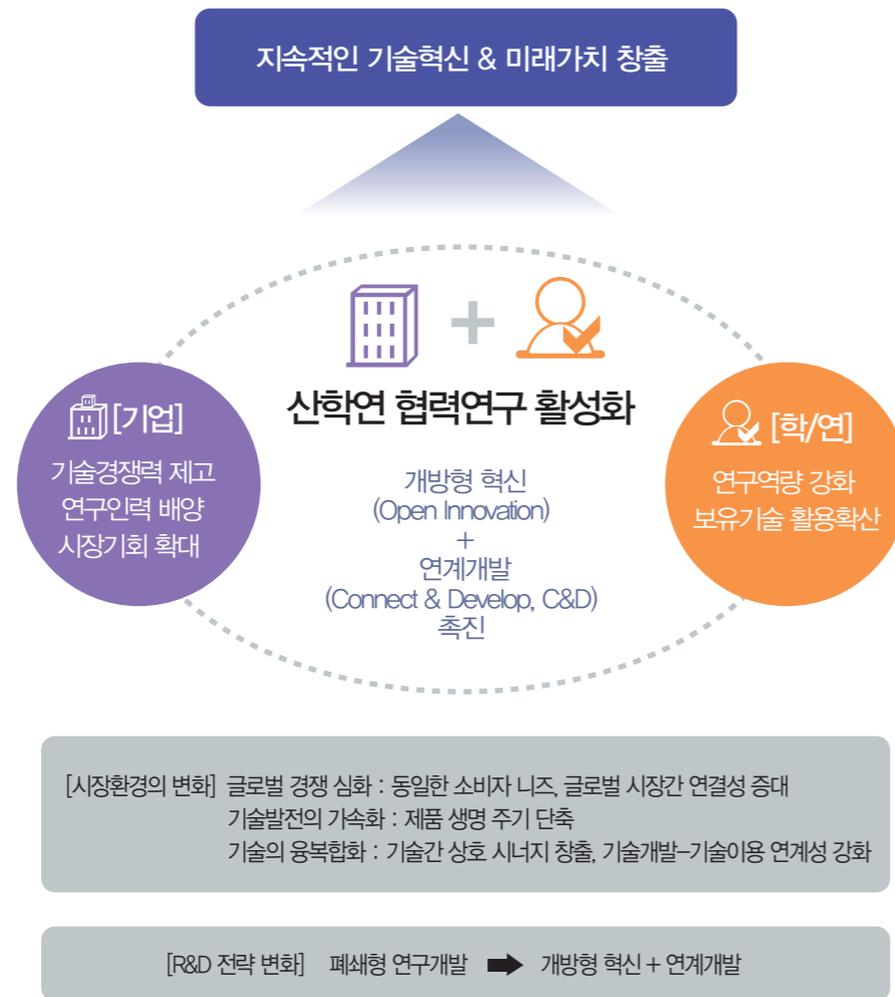
## Contents

추진배경 4 수립목적 6 주요내용 8 기대효과 12 보완·발전 14

##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미래가치 창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세계시장에서 제품 생명주기가 대폭 단축되고 기술 융·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 경쟁 및 지적권 분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21세기.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연계개발(Connect & Develop, C&D)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시장확대를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한 개방형 혁신과 연계개발 확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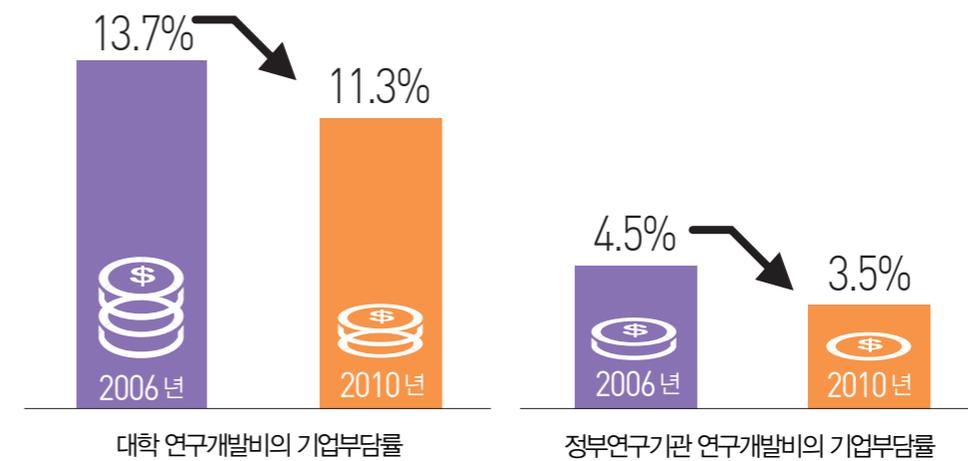


## 소극적인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연구 무엇이 문제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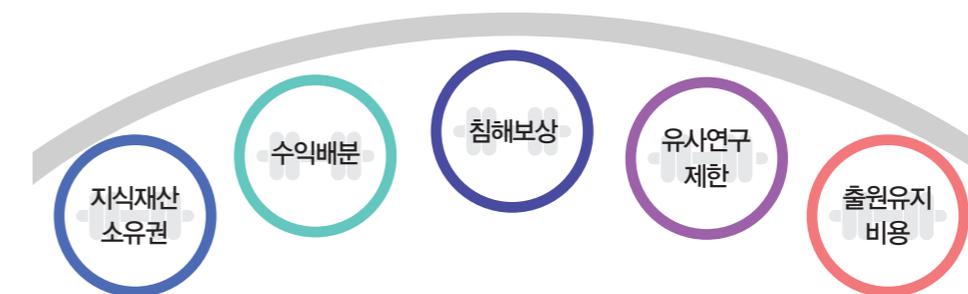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77%(2011년 기준)가 기업에서 활용되는 우리나라는 산-학, 산-연 협력연구 활성화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기업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가 필요한 지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순수한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기업의 대학, 연구소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학연의 연구성과와 산업계 수요간의 기술적 차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협력연구 협약 시 연구비용을 부담하는 기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학연 간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권의 활용, 지적권 활용에 따른 수익배분 등의 입장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 | 기업의 대학·연구소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자료 :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 2012.1)



### |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걸림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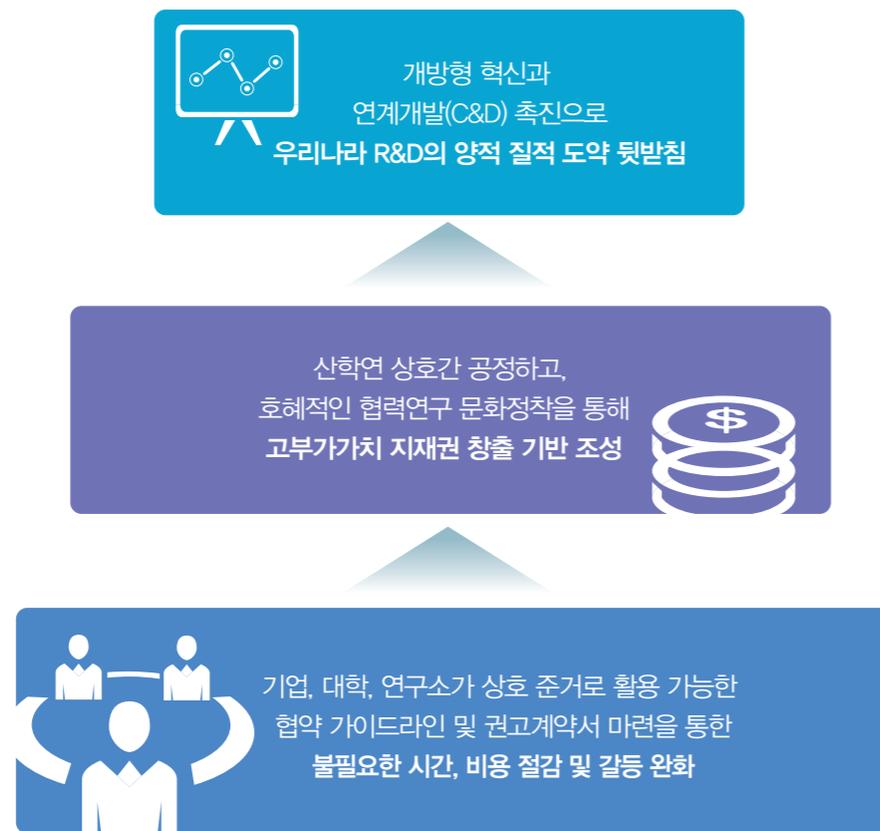


# 수립목적

##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활발한 협력연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협력연구 성과귀속 및 수익배분 등을 통한 산학연 상호 이익의 균형, 상호준거로서의 실효성과 사적자치 유연성간 조화, 협약선택의 다양성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문화 정착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창출기반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였습니다.

### | 수립목표 |



### |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경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협력연구 협약의 개선을 위해 2012년 3월, 15인의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이 2012년 12월 12일 제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 가이드라인 수립 법적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등에 규정



# 주요 내용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연구의 특성과 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택 가능한 6종의 계약서양식과 함께 계약서 유형 선택 방법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 가이드라인 구성 |

개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길잡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계약서(양식), 가이드라인 해설서, 자주 묻는 질문(FAQ)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계약서의 유형 |

소유권의 귀속, 수익배분 등을 중심으로 학연 단독 소유(유형 1, 유형2), 공동 소유(유형 3, 유형 4), 기업 단독 소유(유형 5, 유형 6) 등 6가지 유형의 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

소유권 귀속	실시권 및 수익 배분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선호도
학연 단독 소유	기업에 유상 통상 실시권 허여	(제외) 기업 수용 곤란	學研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유형 1	
	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허여	유형 2	
	기업에 무상 전용 실시권 허여	(제외) 學研 수용 곤란	
공동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유형 3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4	
기업 단독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유형 5	기업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유형 6	
	수익 배분, 보상 없음	(제외) 學研 수용 곤란	

※이 표에서 제외되는 3가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은 사적 자치(계약)에 의해 선택 가능

## | 계약서 유형선택 |

협력연구 과제의 특성과 계약서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2단계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가장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1** 1단계에서는 연구수행 주체 및 연구비 부담주체를 고려하여 우선 계약서 선택 범주를 4개의 유형으로 좁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구수행을 학연이 100% 수행하느냐, 기업이 일부 참여하느냐, 그리고 연구비 부담을 기업이 100% 또는 상당액 부담하느냐, 학연이 연구비를 일부를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 범주가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2** 2단계에서는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기보유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좁힌 후,

- 협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최종 계약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1단계 및 2단계 의사결정에 따른 최종 계약서 유형 선택 방법 ]



⇒ 2개로 압축된 계약서 유형중 협약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최종유형 결정

# 주요 내용

## | 계약서 구성 |

총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연구결과 귀속, 기존 지식재산권 실시, 지식재산권의 처분·실시·수익배분(보상)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 비용 부담,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제한 관련 조문은 6가지 계약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No.	조항	비고
제1조	목적	동일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4조	연구기간	
제5조	연구 책임자	
제6조	연구의 수행	
제7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제8조	연구결과와 보고 및 승인	
제9조	연구결과와 귀속	유형별 차이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제11조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수익 배분(보상) 등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제13조	확약 및 보증	동일
제14조	비밀유지	
제15조	명칭사용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유형별 차이
제17조	계약의 효력발생	동일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제19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제20조	지체상금	
제21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22조	안전사고	
제23조	불가항력	
제24조	계약의 변경	
제25조	계약의 해석	
제26조	분쟁의 해결	

## | 해설서 |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각 조항별 상세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취지, 활용, 쟁점 등에 대한 총 36개의 자주 묻는 질문(FAQ)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 적용대상 |

‘가이드라인’은 산-학, 산-연 양자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가 주된 적용 대상이나, 다자간 협력연구의 경우에도 준용가능합니다. (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산학연 협력연구는 제외됩니다.)

### [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산학, 산연 양자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	포함
 산학연 다자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	준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산학연 협력연구	제외

※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산학연 협약에 대한 객관적 준거로 적용

◎ 상세한 사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ipkorea.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 를 통해 게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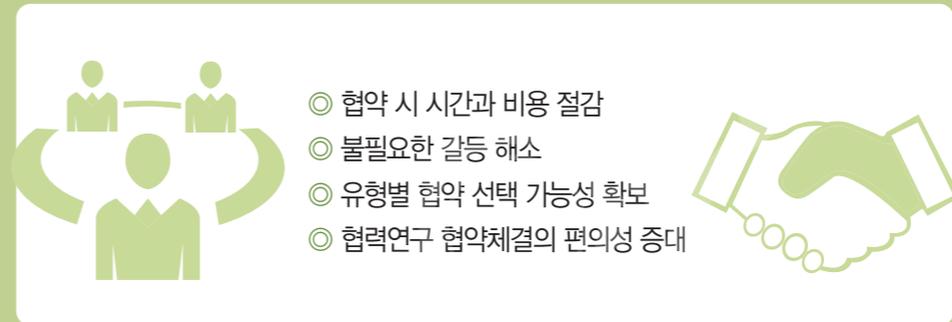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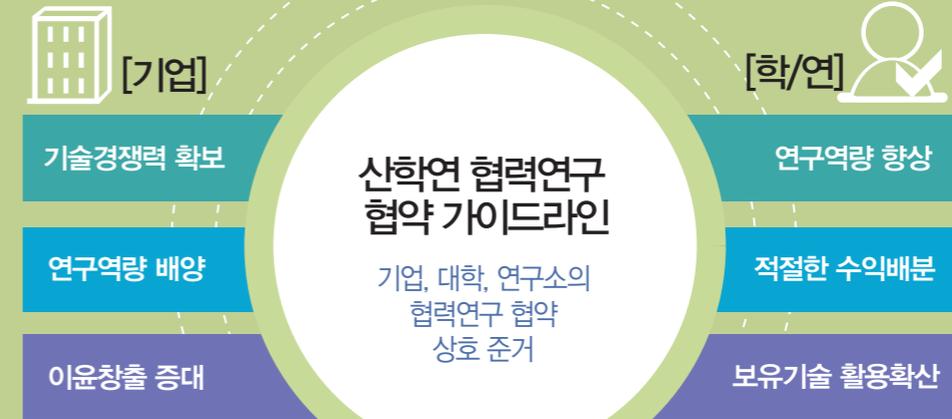


## 기대 효과

### 활발한 산학연 협력연구로 지식재산 강국, 창조경제로의 도약을 실현합니다

-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국가 R&D 외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산학연 협력연구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 ◎ 특히, 사적 계약형태의 산학연 협력연구 경험이 부족한 기업, 대학 등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과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한층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력연구 협약체결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을 통한 협력연구 확대는 기업과 학·연에 기술 경쟁력 및 연구역량 향상, 시장창출과 더불어 충분한 실시에 따른 이윤 증대 및 합리적인 수익배분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등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국가 경쟁력 향상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협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정한 협력연구 협력문화 정착을 앞당기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중인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의 활용 확산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학연 협력연구 문화 정착의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협력연구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산학연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의견 및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 모범·저해사례의 상시적인 수집 및 주기적인 점검, 논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킴으로써 공정한 협력연구 협력문화 정착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위’ 운영체계 |



**기업과 학연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성공적인 협력연구,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문화에서 시작됩니다**

기업과 학연의 동반성장,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한계없는 기술혁신을 이끄는 성공적인 산학연 협력연구,  
공정한 협력연구 협약문화에서 시작됩니다.